

보 고 서

등록번호	규제법무감사팀-
등록일자	2011.11.
결재일자	2011.11.
공개구분	비공개

담당	사무관	과장	국장	차장	청장
협조자					

제 목 :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보고요지 >

2011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등 4개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I. 감사개요

- 기 간 : 2011.9.20(화) ~ 10.28(금) (기간 중 17일간)
- 감 사 자 : ○○○ 등 3명
- 대상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관리소, 의릉·동구릉관리소 등 4개 소속기관
- 감사대상 : 전(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세입·세출예산 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등

II. 감사결과 : 총 18건

- 신분상 조치 : 주의 6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5건, 개선 5건, 기관주의 2건,
- 재정상 조치 : 23,764,020원 (환수 9,241,020원, 감액 14,523,000)

* 모범사례 : 2건

III. 조치계획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 1부. 끝.

기 획 조 정 관
규 제 법 무 감 사 팀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I. 감사개요

- 기 간 : 2011. 9. 20(화) ~ 10. 28(금) (기간 중 17일간)
- 감 사 자 : ○○○ 등 3명
- 대상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관리소, 의릉·동구릉관리소 등 4개 소속기관
-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세입·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II. 총 평

- 유물의 보존처리 계획수립 시 유물훼손 정도, 유물의 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보존처리 계획 수립이 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구입과정 및 보관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유물 훼손에 따른 책임소재 등 민원의 소지가 있어 유물구입규정 등 정비가 필요함
- 협상에의한계약의 제안서평가, 공사 계약변경, 검수처리 등 전반적으로 계약 업무 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 각종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제한경쟁을 혼돈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반복적으로 공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폐기물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해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III. 감사결과

- 신분상 조치 : 주의 6건 (국립고궁박물관 3건, 의릉관리소 1건, 동구릉관리소 2건)
- 행정상 조치 : 총 12건 (시정 5건, 개선 5건, 기관주의 2건)
 - 국립고궁박물관 : 8건 (시정 4, 개선 3, 기관주의 1건)
 - 덕수궁관리소 : 2건 (시정 1건, 개선 1건)
 - 동구릉관리소 : 1건 (기관주의 1건), 의릉관리소 : 1건 (개선 1건)
- 재정상 조치 : 23,764,020원 (환수 9,241,020원, 감액 14,523,000)
 - 국립고궁박물관 17,736,020원 (환수 3,213,020원, 감액 14,523천원)
 - 덕수궁관리소 : 환수 6,028,000원
- * 모범사례 : 2건 (덕수궁관리소 1건, 의릉관리소 1건)

IV. 조치계획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국립고궁박물관 : 11건 (시정 4건, 주의 3, 개선 3, 기관주의 1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p>■ 궁중유물 보존처리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p> <p>○ 고궁박물관은 왕실 유물의 전시, 연구, 보존 등을 위해 '11.8.31 현재 회화류 등 42,574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 보존처리가 시급한 유물은 5,159점임</p> <p>▶고궁박물관 소장 보존처리가 시급한 유물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151 633 821 1330"> <thead> <tr> <th>종별</th> <th>수량(점)</th> <th>긴급처리대상(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서화류</td><td>336</td><td>168</td><td></td></tr> <tr><td>악기류</td><td>317</td><td>32</td><td></td></tr> <tr><td>인장류</td><td>1,041</td><td>104</td><td></td></tr> <tr><td>어책류</td><td>373</td><td>37</td><td></td></tr> <tr><td>현판류</td><td>773</td><td>232</td><td></td></tr> <tr><td>제구류</td><td>13,033</td><td>1,303</td><td></td></tr> <tr><td>전적류</td><td>1,387</td><td>139</td><td></td></tr> <tr><td>복식류</td><td>3,008</td><td>301</td><td></td></tr> <tr><td>생활도구류</td><td>3,030</td><td>909</td><td></td></tr> <tr><td>무구류</td><td>100</td><td>10</td><td></td></tr> <tr><td>노부류</td><td>651</td><td>326</td><td></td></tr> <tr><td>과학기기류</td><td>50</td><td>5</td><td></td></tr> <tr><td>피지초직류</td><td>5,218</td><td>522</td><td></td></tr> <tr><td>금속공예류</td><td>2,909</td><td>291</td><td></td></tr> <tr><td>기타류</td><td>631</td><td>61</td><td></td></tr> <tr><td>근대유물</td><td>4,677</td><td>467</td><td></td></tr> <tr><td>기타</td><td>11</td><td>1</td><td></td></tr> <tr><td>합 계</td><td>42,574</td><td>5,159</td><td></td></tr> </tbody> </table> <p>○ 고궁박물관이 마련한 유물보존처리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매년 9억원 내외를 투입 2012년~2021년(1차, 10개년)동안 서화류 상태 진단 및 보존처리(168점), 노부류 상태진단 및 보존처리(326점), 가구류 상태진단(141점) 실시할 계획임</p> <p>○ 현재의 유물보존처리 중장기 계획대로 유물 종별로 연차계획을 세워 상태진단 및 보존처리를 실시할 경우, 1차년도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종류의 유물은 훼손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보존처리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2021년 이후에나 보존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p>	종별	수량(점)	긴급처리대상(점)	비고	서화류	336	168		악기류	317	32		인장류	1,041	104		어책류	373	37		현판류	773	232		제구류	13,033	1,303		전적류	1,387	139		복식류	3,008	301		생활도구류	3,030	909		무구류	100	10		노부류	651	326		과학기기류	50	5		피지초직류	5,218	522		금속공예류	2,909	291		기타류	631	61		근대유물	4,677	467		기타	11	1		합 계	42,574	5,159		<p>○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보존처리가 긴급한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물 보존처리 중장기계획을 보완하 시기 바람</p>	<p>개선</p>
종별	수량(점)	긴급처리대상(점)	비고																																																																											
서화류	336	168																																																																												
악기류	317	32																																																																												
인장류	1,041	104																																																																												
어책류	373	37																																																																												
현판류	773	232																																																																												
제구류	13,033	1,303																																																																												
전적류	1,387	139																																																																												
복식류	3,008	301																																																																												
생활도구류	3,030	909																																																																												
무구류	100	10																																																																												
노부류	651	326																																																																												
과학기기류	50	5																																																																												
피지초직류	5,218	522																																																																												
금속공예류	2,909	291																																																																												
기타류	631	61																																																																												
근대유물	4,677	467																																																																												
기타	11	1																																																																												
합 계	42,574	5,159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p>■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궁박물관은 궁중 유물 구입을 위해 2006.4.17 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을 제정,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초에 유물구입계획을 수립· 보고 후 유물구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궁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 계획 및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매도대상 유물의 사진(3×5) 4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고궁박물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유물 접수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유물임시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행하여 주고 있음 ○ 이후, 매도신청자로부터 실물 유물을 제출받아 약 2개월 동안 3차에 걸친 유물 평가를 실시한 후 유물 구입 여부를 확정하고, 구입 제외가 결정된 유물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통보 및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구입 제외 결정된 유물을 매도 신청인에게 반환 시, 매도신청 접수 과정에서 유물의 훼손 부위 등 유물의 상태를 설명한 자료 및 사진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받아야만 유물 반환시 정확한 검증이 가능하나, 현행 유물구입규정에 의거 매도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검증에 의한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음 <p>- 특히 전적, 문서 등 수습 여장이 낱장으로 이루어진 유물의 경우 특히 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면서 유물을 평가하는 시점에 유물이 손상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시 현행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p> <p>*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사본 1부(별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매도 신청인으로부터 구입 의뢰 받은 유물은 훼손상태, 시점 등 구입대상에서 제외 되어 반환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검증 될 수 있도록 유물구입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 구입 대상 선정 시 친인척 등 매도자와 이해당사자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람 	<p>개선</p>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동 규정 제8조에 구입 대상 유물 선정에 공정성 등을 기하고자 유물매도신청인 본인은 당해 유물의 매도와 관련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제척 조항을 두고 있으나, - 유물 매도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도 당해 유물 매도와 관련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공정한 심사를 해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p>■ 매도 신청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궁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고궁 박물관의 유물구입 계획 및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유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음 ○ 고궁박물관은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제1차 평가위원회(구입유물 예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입대상 유물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한 후, 구입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유물에 한하여 제2차 평가 및 제3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제1차 평가위원회에서 구입가치가 없다고 평가된 유물은 평가 즉시 매도신청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나, 현재는 구입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유물의 최종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고궁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11조에 의거 유물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이로 인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1개월 이상 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매도신청인 입장에서 타기관 등에 유물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유물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불필요한 민원 야기 및 장기간 유물 보관에 따른 보존 관리 문제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조치하시기 바람 	<p>개선</p>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p>○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왕실유물 DB구축을 위한 사진촬영’(‘11.02.11 공고/발주금액 100,000천원)을 입찰에 부치면서, 수행 실적 1건의 2,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여 제한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사진촬영 외 관련사업 수행실적 3건 이상’ 국립박물관 사진촬영 10년 이상 경력’ 등을 자격요건에 포함하여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p> <p>■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적용 부적정</p> <p>○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및 별표’에 의해 평가 각 항목별(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실적 등)로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배점하도록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p> <p>○ 국립고궁박물관은 2011년 2건의 용역 계약을 협상에 의한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제안서 평가배점을 규정에 맞지 않게 30점 이상으로 설정한 평가항목이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음</p> <p>■ 발간물 저작권 설정 부적정</p> <p>○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0조(저작권), 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57조(출판권 설정)에 근거하여 어문·사진·영상·미술 저작물 등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다른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p> <p>○ 국립고궁박물관은 ‘09년 이후 ‘창덕궁, 아름다운 덕을 펼치다’ 도록 등 13건의 발간물 발행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고, 사진, 편집·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당해사업 목적 외 사용허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저작권 분쟁 시 민원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p>	<p>○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p> <p>* 관련자 : ○○○ ○○○</p> <p>○ 향후 발간물 발행 시 원고, 사진, 편집 디자인 등 저작권자 설정을 명확히 하여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p>	<p>주의</p> <p>시정</p>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p>■ 면세사업자 부가가치 세액 지급 부적정</p> <p>○ 국립고궁박물관은 ‘목칠기 위탁 보존처리’ 용역계약을 ○○○(대표 ○○○)·○○○(대표 ○○○) (2011.03.04/○○○ 21,971,540원, ○○○ 21,796,460원) 두 업체와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세사업자인 영산공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 세액 1,981,49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p> <p>■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p> <p>○ 국립고궁박물관은 매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에 합당한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p> <p>○ 아래의 자료 내용과 같이 ‘09.07~12월에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3,641,490원)을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업무추진비, 포상비로 집행하였음</p> <p>▶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내역</p> <table border="1" data-bbox="130 1178 826 1637"> <thead> <tr> <th>지출 일자</th> <th>예산 과목</th> <th>지급 액(원)</th> <th>집행내역</th> </tr> </thead> <tbody> <tr> <td>‘09.07.10</td> <td>210-01</td> <td>200,000</td> <td>남경 공무국외여행 선물구입</td> </tr> <tr> <td>‘09.08.10</td> <td>210-01</td> <td>360,000</td> <td>자원봉사자 총회 진행비</td> </tr> <tr> <td>‘09.09.25</td> <td>210-01</td> <td>200,000</td> <td>공무 국외여행 선물구입비</td> </tr> <tr> <td>‘09.12.28</td> <td>210-01</td> <td>200,000</td> <td>‘09 하반기 체육행사진행비</td> </tr> <tr> <td>‘09.12.24</td> <td>210-01</td> <td>1,500,000</td> <td>‘09년 연말 사무환경 정비 포상금</td> </tr> <tr> <td>‘09.12.24</td> <td>210-01</td> <td>481,490</td> <td>‘09년 연말 업무추진 유공자 자체 포상금</td> </tr> <tr> <td>‘09.12.28</td> <td>210-01</td> <td>700,000</td> <td>‘09년도 연말 다과회 실시</td> </tr> <tr> <td>계</td> <td>7건</td> <td>3,641,490</td> <td></td> </tr> </tbody> </table> <p>■ 천정 철거 공사비 산정 관련</p> <p>○ ‘11.3월 지하수장고 6개실에 대한 조습패널 설치 공사를 주)○○○○와 계약(914,592천원)하여 추진 중에 있음</p> <p>○ 동 공사의 계약내역을 검토한 결과 물가조사기관 등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천정의 철거비(2011년 적산자료 기준 10,464원) 단가는 ㎡당 10,000원 정도이나 동 계약내역에는 ㎡당 33,000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임</p>	지출 일자	예산 과목	지급 액(원)	집행내역	‘09.07.10	210-01	200,000	남경 공무국외여행 선물구입	‘09.08.10	210-01	360,000	자원봉사자 총회 진행비	‘09.09.25	210-01	200,000	공무 국외여행 선물구입비	‘09.12.28	210-01	200,000	‘09 하반기 체육행사진행비	‘09.12.24	210-01	1,500,000	‘09년 연말 사무환경 정비 포상금	‘09.12.24	210-01	481,490	‘09년 연말 업무추진 유공자 자체 포상금	‘09.12.28	210-01	700,000	‘09년도 연말 다과회 실시	계	7건	3,641,490		<p>○ 각종 계약 또는 대가 지급 시 계약상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고 과오 지급된 부가가치세액 1,980,490원은 환수하시기 바람</p> <p>○향후 예산 집행시에는 회계규정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p> <p>○ 석면으로 추정하여 과오 책정된 천정 철거공사비를 시공사와 재협의 된 금액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감액 금액 : 14,523천원)</p>	<p>시정(환수)</p> <p>기관주의</p> <p>시정(감액)</p>
지출 일자	예산 과목	지급 액(원)	집행내역																																			
‘09.07.10	210-01	200,000	남경 공무국외여행 선물구입																																			
‘09.08.10	210-01	360,000	자원봉사자 총회 진행비																																			
‘09.09.25	210-01	200,000	공무 국외여행 선물구입비																																			
‘09.12.28	210-01	200,000	‘09 하반기 체육행사진행비																																			
‘09.12.24	210-01	1,500,000	‘09년 연말 사무환경 정비 포상금																																			
‘09.12.24	210-01	481,490	‘09년 연말 업무추진 유공자 자체 포상금																																			
‘09.12.28	210-01	700,000	‘09년도 연말 다과회 실시																																			
계	7건	3,641,490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p>○ 사유로는 20여년 이전에 설치된 천정재에 석면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설계과정에서 석면 해체 비용을 산출근거 없이 1식 형태로 철거비용에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 중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p> <p>○ 따라서 과오 책정된 내역단가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 단가를 현 시세에 맞추어 감액조정하고 미반영된 폐기물처리비 등을 추가 반영한 결과 14,523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한 상태로 동 금액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할 필요가 있음</p> <p>■ 특별전 전시패널 설치 공사 정산 관련</p> <p>○ 매년 3~5회 특별전시가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 추진 방식은 확정된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개략 공사비 총액만을 정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 후, 공사 과정에서 도면 및 내역을 최종 확정하고 준공 시점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p> <p>○ 또한 2009년 자체감사 지적으로 전시 패널 공사의 필름지 실사출력 공사비 산출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음</p> <p>○ 이와 관련하여 '11년 시행된 창덕궁 특별전시 공사(계약금액 93,500천원) 정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09년9월 제정된 실사출력 기준금액은 ㎡당 25,000원~28,700원 이나 동 공사는 ㎡당 58,000천원을 반영하여 기준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으며 출력된 필름 부착을 위한 노무비를 산출근거(일위대가) 없이 ㎡당 70,400원을 과다 책정하는 등 공사비 정산을 부실하게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 시공업체에서도 실사출력 부분에 대한 단가를 자체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내역에 미 포함되었던 실제 시공물량 등을 반영하여 재 정산할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동 건에 대해 재 정산할 필요가 있음(단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미 인정)</p>	<p>○ 창덕궁 특별전 인테리어 공사 준공내역에 대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확인 한 후 재 정산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p> <p>○ 자체 기준에서 정한 단가를 정산내역에 반영하지 않은 등 정산을 형식적으로 실시 한 공사 감독 및 검수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함</p> <p>* 관계자 : ○○○ ○○○</p>	<p>주의 및 시정 (재 정산)</p>

덕수궁관리소 : 2건 (시정 1건, 개선 1건), * 모범사례 1건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p>■ 담장 기와 잇기 공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부터 매년 노후 및 파손된 담장 상부 지붕 보수 공사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09년 60m(○○건업/132,025천원), '11년 91m(○○건설/185,097천원)를 보수 완료한 상태임 ○ 상기공사에 대한 내역 검토 결과 설계서(내역서 및 산출서)에는 암기와를 3겹 잇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2.5겹 잇기로 되어 있음 ○ 기존의 담장이 2.5겹 잇기로 시공되어 있는 점을 감안 2.5겹 잇기로 시공하고 남은 기와 물량을 덕수궁관리소에 제공한 것은 적정하나, 시공물량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6,028천원(협의금액)을 설계변경 감액하였어야 하나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상에 3겹잇기와 2.5겹잇기 품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공사 중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감액조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2009년 공사/○○건업》</p> <table border="1" data-bbox="135 1200 774 1379"> <tr> <td>단가 재 산출 (협의 단가)</td> <td>○3겹잇기 : m²당 79,172천원 ○2.5겹잇기 : m²당 69,327천원</td> </tr> <tr> <td>인건비 절감액</td> <td>○2,088천원 -직접비(1,831천원)+ 간접비(257천원) · 186m²×9,845원=1,831천원</td> </tr> </table> <p>《2011년 공사/○○건설》</p> <table border="1" data-bbox="135 1476 774 1657"> <tr> <td>단가 재 산출 (협의 단가)</td> <td>○3겹잇기 : m²당 84,503천원 ○2.5겹잇기 : m²당 73,995천원</td> </tr> <tr> <td>인건비 절감액</td> <td>○3,940천원 -직접비(2,788천원)+ 간접비(1,162천원) · 265.35m²×10,508원=2,788천원</td> </tr> </table>	단가 재 산출 (협의 단가)	○3겹잇기 : m ² 당 79,172천원 ○2.5겹잇기 : m ² 당 69,327천원	인건비 절감액	○2,088천원 -직접비(1,831천원)+ 간접비(257천원) · 186m ² ×9,845원=1,831천원	단가 재 산출 (협의 단가)	○3겹잇기 : m ² 당 84,503천원 ○2.5겹잇기 : m ² 당 73,995천원	인건비 절감액	○3,940천원 -직접비(2,788천원)+ 간접비(1,162천원) · 265.35m ² ×10,508원=2,78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와 잇기 형태(3겹 또는 2.5겹 등)에 따라 그에 맞는 품이 설계·시공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수정·보완하고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수리기술과) ○ 시공물량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즉시 환수토록 하고 향후부터는 감독 및 검사업무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덕수궁관리소) (환수 금액 : 6,028천원) 	<p>시정 및 개선 (환수, 수리기술과 통보)</p>
단가 재 산출 (협의 단가)	○3겹잇기 : m ² 당 79,172천원 ○2.5겹잇기 : m ² 당 69,327천원									
인건비 절감액	○2,088천원 -직접비(1,831천원)+ 간접비(257천원) · 186m ² ×9,845원=1,831천원									
단가 재 산출 (협의 단가)	○3겹잇기 : m ² 당 84,503천원 ○2.5겹잇기 : m ² 당 73,995천원									
인건비 절감액	○3,940천원 -직접비(2,788천원)+ 간접비(1,162천원) · 265.35m ² ×10,508원=2,788천원									
<p>■ 청소년 등공·능 무료관람권 확대시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에서 「공·능원 및 유적관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청소년(만7세~만18세) 및 저소득층(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람객에게 무료 관람권을 발권하여 입장시킬 수 있도록 공·능에 일괄 통보함에 따라 '11.10.1.일부터 무료관람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매표소에서 무료관람자 신분 확인 후 무료입장권을 발권하면 수표원이 관람권을 확인·절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입장권의 색상 및 디자인이 유료입장권과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무료입장권이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p>개선 (공·능문화재과통보)</p>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p>후 입장시키고 있으나 유·무료입장권의 디자인 및 색상이 동일한 상태에서 단지 입장권에 표시되는 금액만 1,000원과 0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수표원이 관람권을 제출받아 금액을 확인해야 하면서 관람객도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이 입장객이 일시에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수표원이 유·무료입장권을 일일이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인 반면 무료입장권 발권은 용이하여 무료입장권이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음 ○ 따라서 무료입장권을 수표원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등 관계자가 유·무료입장권 발권 상태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관람권을 달리 제작·운영할 필요가 있음 		

□ 모범사례 1건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p>■ 증명전 지역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전에 바로 인접한 주택으로 증명전 보수의 어려움 및 미관 불량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소유자인 ○○학원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철거에 소극적인 ○○학원 측을 설득하여 건물 2동을 철거함. ○ 증명전지역 토지경계(○○학교 경계)가 들쭉날쭉하게 불규칙 한데다 담장 설치시 미관이 불량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인접한 ○○학교(○○학원)와 토지를 상호 대토(각189.30㎡)를 하여 경계를 직선화함. ○ 증명전과 ○○학교 경계의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조성(123m) ○ 증명전과 대사관저 경계의 한식기와 담장 번와공사(113m) ○ 관리동 설치(32.1㎡) 및 노후 창고 및 정문초소 철거 ○ 위치가 부적절한 전기시설물(변압기) 1기 이설 <p>* 기대효과 : 대한제국 역사의 현장으로서 사적지에 걸맞는 증명전원형 보존 및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포상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실시 	

의릉관리소 : 2건 (주의 1건, 개선 1) * 모범사례 1건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p>■ 폐기물 처리 공사 발주 및 정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2월 가설건축물 철거(5,556천원) 및 처리(6,743천원) 공사를 주)○○개발(대표 임수택)과 수의계약(12,290천원) 체결하여 당초 계약 물량 55.5ton이 모두 반출 된 것으로 증빙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 가설건물의 폐기물 총량을 혼합폐기물 55.5톤으로 설계하였으나 건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철재 트러스, 철 계단, 샌드위치 패널의 철판)을 장수자원(고물상)에 별도 매각(5톤 트럭 2대분)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 물량을 감액 조정하지 않았음 - 폐기물 처리 과정 사진에는 15톤 트럭 3대가 폐기물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업체는 6대를 반출한 것으로 하여 증빙서를 제출하였고 계량증명서에 동일 사진을 중복하여 사용하였으며, 계량한 일자('11.2.1일)도 실제 반출('11.1.30일) 날짜와 일치하지 않은 상태이나 대금 지급과정에서는 이를 확인·정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약 15톤 규모의 폐 콘크리트 및 폐 목재등은 건설폐기물(2만원이내)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이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혼합폐기물(6만원)로 계상하여 약6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부터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종류 및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감독자가 현장에서 직접 반출되는 물량을 확인·정산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자 : ○○○ 	<p>주 의</p>
<p>■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릉 관리소는 국유지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420 (지목:도로) 내 505㎡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용도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동대문구청에 2010.12.03-2011.12.02(1년) 기간 동안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무상사용 허가 하였음 ○ 이에 동대문구청은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동 국유지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한 법인인 동대문구시설공단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였으며, 현재는 동 공단에서 45개의 주차 구획을 조성하여 지역 거주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릉관리소에서는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시 관련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p>시정</p>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주차요금]					
구 분	거주형태	요 금(원)	비 고		
전일주차	거주자	월 40,000			
	사업자(비거주자)	월 50,000			
주간주차	거주자	월 30,000			
	사업자(비거주자)	월 35,000			
야간주차	거주자	월 20,000			
	사업자(비거주자)	월 25,000			
<p>○ 국유재산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의릉관리소에서는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시 허가조건 제8조에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허가한 상태임</p>					

□ 모범사례 1건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p>▣ 의릉 진입로 주변 및 주차장 관람환경개선</p> <p>○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등 야간에 비워있는 공공기관의 주차장 활용 목적으로 야간에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의릉관광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공간이 주·야 지역주민의 전용주차공간으로 점차 퇴색됨</p> <p>○ 의릉 진입로 주변 도로변에 무질서한 주차 방지를 위하여 구청에 주차단속요청 및 주차통제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로로 이용</p> <p>○ 의릉 관람객 주차장에 상시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이동조치 및 주간에는 관람객만 이용하도록 주차장을 통제하고 야간에는 주차장 폐쇄조치</p> <p>* 기대효과 :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주</p>		<p>○ 2011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포상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실시</p>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차공간을 정비하여 의릉 진입로 주변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은 경관 확보 - 개선 전에는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개선 후에는 보행자 통행 및 운전자 안전이 확보됨		

동구릉관리소 : 3건 (주의 2건, 기관주의 1건)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p>■ 문화재수리업의 시공에 관한 사항</p> <p>○ 동구릉은 사적 제193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사적지 내에서 행하여 지는 경관조성, 보수·정비사업, 식재사업 등의 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수리업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야 함에도</p> <p>○ 2008 ~ 2011. 4월까지 ‘건원릉주변 배수로 석축 정비’ 공사 계약 등 사업4회에 대하여 걸쳐 ‘문화재수리업’의 자격이 없는 ‘기타자유업’으로만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음</p> <p>[계약체결 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계 약 명</th> <th>계약자</th> <th>업 종</th> </tr> </thead> <tbody> <tr> <td>건원릉주변 배수로 석축공사</td> <td>○○조경 (김포시)</td> <td>기타자유업</td> </tr> <tr> <td>원릉사초지 및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사업</td> <td>○○조경 (김포시)</td> <td>기타자유업</td> </tr> <tr> <td>태풍피해 수목 긴급정비사업</td> <td>○○조경 (김포시)</td> <td>기타자유업</td> </tr> <tr> <td>송릉 수종갱신지 식재사업</td> <td>○○조경 (김포시)</td> <td>기타자유업</td> </tr> </tbody> </table>	계 약 명	계약자	업 종	건원릉주변 배수로 석축공사	○○조경 (김포시)	기타자유업	원릉사초지 및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사업	○○조경 (김포시)	기타자유업	태풍피해 수목 긴급정비사업	○○조경 (김포시)	기타자유업	송릉 수종갱신지 식재사업	○○조경 (김포시)	기타자유업	<p>○ 향후 문화재수리 시공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업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체참가자격을 제한하시기 바람</p> <p>* 관련자 : ○○○</p>	주 의
계 약 명	계약자	업 종															
건원릉주변 배수로 석축공사	○○조경 (김포시)	기타자유업															
원릉사초지 및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사업	○○조경 (김포시)	기타자유업															
태풍피해 수목 긴급정비사업	○○조경 (김포시)	기타자유업															
송릉 수종갱신지 식재사업	○○조경 (김포시)	기타자유업															
<p>■ 물품 구매 분할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p> <p>○ 동구릉관리소는 ‘목릉곡장 보수용 자재 구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조건과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동일사업에 대하여 1개의 업체에 3회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였음</p>	<p>○ 향후 공사,용역 물품계약 시 분할 계약을 지양하시고,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을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p> <p>*관련자 : ○○○</p>	주 의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계약체결 내역]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계약자		
목릉곡장 보수용 자재구입	'08.12.15	20,000	○○기업 (서울시)		
목릉곡장 보수용 자재구입	'08.12.23	9,082	○○기업 (서울시)		
목릉곡장 보수용 자재구입	,08.12.23	10,917	○○기업 (서울시)		
■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 동구릉관리소에서는 '08년도 ~ '11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회계규정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일반수용비(210-01), 특근매식비(210-05)를 간담회비로 부당하게 예산 집행				○향후 예산 집행시에는 회계규정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일자	건명	금액(원)	예산과목		
'08.7.18	직원간담회 물품 구입	202,310	210-05		
'09.4.3	건원릉 참초행사 자문 간담회	160,000	210-01		
'09.8.12	직원 간담회 개최	300,000	210-01		
'09.12.16	산불예방 간담회 개최	119,000	210-05		
'10.4.22	강사 간담회 개최	190,000	210-01		
'10.5.7	어린이날행사 간담회 개최	135,000	210-01		
'10.5.27	문화재현장답사 식대	683,000	210-01		
'10.12.8	간담회 개최	195,000	210-01		
'11.5.24	어린이날행사 간담회 개최	110,000	210-01		
'11.7.6	역사문화관 개관식 식대	304,000	210-01		
합 계		2,398,310			